

일반공중에 대하여 특정인의 성명을 언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

베를린고등법원

1987.4.28 선고 -9 U 1052/87 사건

적용법조

독일기본법 제 1 조, 제 2 조

판결요지

1. 일반적인 인격권에는, 당사자가 선택한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 및 그 자신이 일반공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다.
2. 어떤 사람을 인쇄물에 그 성명을 게재하여 기술하는 것 및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사람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행위는 그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독일기본법 제 1 조 및 제 2 조가 보호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일반대중의 흥미를 자극시키는 수사절차가 진행되었다가 현재는 중단되어 있었는 바, 이에 관하여 나중에 어떤 책을 출판하면서 위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사실개요

신청인들은, 1986 년에 발간된 「O」 책의 발행인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책(125 면)에 포함된 내용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1986 12. 11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처분을 획득하였던 바,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면,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책에서, 신청인들이 수뢰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내세우거나 퍼뜨려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위 수사절차는 현재 중지되어 있다는 표시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 이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질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위 가처분을 인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판결이유

피신청의 항소는 허가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없다. 따라서 위 가처분은 정당하다. 어떤 사람을 인쇄 때문에 그 성명을 게재하여 기술하는 것 및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사람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행위는 그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독일 기본법 제 1 조 및 제 2 조가 보호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권리는 당사자가 선택한 익명으로 남아 있을 권리 및 그 자신이 일반공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의 가처분에 의하여 금지된 주장의 내용이 그러한 것과 같이, 통지될 사정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인격권이라는 것은

피해받은 인격의 이러한 성향을 보도하는 것보다도 더욱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일반대중에 대하여 그에 관한 묘사를 하는 것이 그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그 피해자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일반공중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그 이익이 피해자의 인격권의 보호보다도 더욱 우선하는 경우일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고있는 책에서의 위 묘사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일반대중의 진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로써 바로 어떤 인격에 대한 모든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보를 일반공중이 알게 되는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은,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하여 행해졌으나 그 후 중단되었던 수사절차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 수사절차가 아직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수사절차가 이미 중단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일반공중의 위 보도에 대한 위와 같은 정당한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견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수사절차가 중단되게 된 이유는 검찰의 중단결정의 이유에 의한다면, 광범위한 수사과 수색이 행해진 이후에, 「신청인이 수뢰 내지는 수뢰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는 어떠한 혐의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이야기된 혐의점들은 이유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위 혐의는 그 발생 및 내용에 있어서 신청인의 인격에 관한 일반대중의 보도(이는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등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중지된 수사절차에 관한 보도도 역시, 그 보도의 문맥으로부터 판단하면, 일반대중에게 신청인이 위와 같은 혐의를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중요성이 없는 것이다. 즉 일반공중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관하여 하등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다투고 있지 않는 바와 같이) 위 책의 재판이 인쇄되어 공급됨으로 인하여 위 기사가 반복되어 알려짐으로써 신청인들의 인격권은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기사의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지방법원이 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고려되어야 할 권리침해의 종류에 비추어 즉각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절차를 개시함에 앞서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수사절차에 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시에 그 수사절차가 중지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보도해줄 것만을 요구해 왔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하지 아니하며, 이 점을 지방법원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 신청인에 대하여 「그 당시 최소한 다른 하나의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은 하등의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위 수사절차는 다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